##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010 발의연월일: 2025. 4. 22.

발 의 자: 박지원·장철민·김원이

민형배 • 이건태 • 문진석

박해철 • 부승찬 • 임미애

서영교 • 박지혜 • 이소영

허성무 · 서미화 · 신장식

의원(15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공개대상자등은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 모두가 보유한 주식의 총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3천만원)을 초과하게 되는 때에는 해당 주식에 대해 주식 직무관련성 심사를 받고,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을 하게 하는 주식백지신탁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제도는 국내 주식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해외주식에 대하여는 주식백지신탁제도를 적용하지 않고 있는 상황임. 그런데 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해외기업들이 국내에 입찰을 하거나 국내민사·형사·행정소송 등 수사 또는 조사가 필요한 경우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실제로 공직자의 해외주식보유량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따라서 해외주식에 대하여도 직무관련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주식 직무관련성 심사결과는 청구인에게만 통지하도록 하고 있어, 외부에는 모두 공개되고 있지 않아 주식백지신탁제도가 자칫 자의적·형식적으로만 운영될 수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제기되어 왔음.

이에 주식백지신탁 대상에 해외주식을 포함시킴으로써 주식백지신 탁 제도가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직무관련성 심사 청구사항 및 심사결과는 공개를 원칙으로 정하되, 위원회의 결정으로 일부를 공개하지 않도록 하여 공직자 재산공개의 투명성을 높이면서 도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4제1 항. 제14조의5제12항). 법률 제 호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보유한 주식"을 "보유한 주식(국외에서 발행된 외국법인의 주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14조의5제12항부터 제14항까지를 각각 제13항부터 제1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는 제6항에 따른 직무관련성 심사 청구사항 및 제7항에 따른 직무관련성 심사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한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주식백지신탁 위원회의 결정으로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14 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공개대상자등 본인과 그 이해관계자

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총가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이 법 시 행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14조의4제1항 본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의4(주식의 매각 또는 신	제14조의4(주식의 매각 또는 신
탁) ① 등록의무자 중 제10조	탁) ①
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자와 기	
획재정부 및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사람(이하 "공개대상자등"이	
라 한다)은 본인 및 그 이해관	
계자(제4조제1항제2호 또는 제	
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되,	
제4조제1항제3호의 사람 중 제	
12조제4항에 따라 재산등록사	
항의 고지를 거부한 사람은 제	
외한다. 이하 같다) 모두가 <u>보</u>	<u>보</u>
<u>유한 주식</u> 의 총 가액이 1천만	유한 주식(국외에서 발행된 외
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범위	국법인의 주식을 포함한다. 이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	<u>하 같다)</u>
액을 초과할 때에는 초과하게	
된 날(공개대상자등이 된 날	
또는 제6조의3제1항ㆍ제2항에	
따른 유예사유가 소멸된 날 현	
재 주식의 총 가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공개대상자등이 된 날 또는 유예사유가 소멸된 날을, 제14조의5제6항에 따라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에 직 무관련성 유무에 관한 심사를 청구할 때에는 직무관련성이 있다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을, 제14조의12에 따른 직권 재심 사 결과 직무관련성이 있다는 결정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직 접 하거나 이해관계자로 하여 금 하도록 하고 그 행위를 한 사실을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의5제7항 또 는 제14조의12에 따라 주식백 지신탁 심사위원회로부터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결정을 통지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 1. 2. (생략)
- ② ~ ⑥ (생 략)

제14조의5(주식백지신탁 심사위 제14조의5(주식백지신탁 심사위

,
 1 이 (원웨리 가이)
1 () /젊겠미 가 0 \

- 1.•2. (현행과 같음)
- ② ~ ⑥ (현행과 같음)

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 등) 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 등)

① ~ ① (생 략) <u><신 설></u>

① ~ ① (현행과 같음)

①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는 제6항에 따른 직무관련성 심사청구 사항 및 제7항에 따른 직무관련성 심사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한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인정되는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주식백지신탁 위원회의 결정으로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 ⑭ (생 략)

① ~ ① (현행 제12항부터 제 14항까지와 같음)